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35

발의연월일: 2020. 9. 25.

발 의 자:김상훈·조경태·최춘식

윤두현 · 김형동 · 김석기

김희국 · 김승수 · 조수진

강대식 · 서병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 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.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 개시로부터 4년~7년이 경과한 기업은 이른바 데스밸리(De ath Valley)에 해당되나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 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지만,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은 3년 동안만 면제받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음. 아울러 창업자가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창업 제

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의3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년"을 "7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 한다.

- ③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.
- 1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- 2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- 3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- 4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3(부담금의 면제) ① (생	제39조의3(부담금의 면제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	②
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	
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	
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	
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	
업을 개시한 날부터 <u>3년</u> 동안	<u>7년</u>
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	<u><삭 제></u>
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	
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	
이용부담금	
9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	<u><삭 제></u>
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	
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	
10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	<u><삭 제></u>
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	
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	
<u> </u>	
11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	<삭 제>

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

 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

 이용부담금

12. ~ 16. (생 략) <신 설>

- 12. ~ 16. (현행과 같음)
- ③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.
- 1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

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

 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

 이용부담금
- 2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

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

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- 3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

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

 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

 급
- 4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 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이용부담금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
,